

(붙임 2)

한국은행 울산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4.3.19일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울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5. 기타 울산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20%)
3.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규정에 대한 이해도(3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¹⁾²⁾

전산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일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
A2	벤처기업	전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제조업체
A3	혁신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신기술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신제품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특허법」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 -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실용신안등록증' - 「디자인보호법」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디자인등록증' - 기술평가인증서(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을 완료 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에 최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제출한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인증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A4	녹색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고 동 요령 제10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에 의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고 동 요령 제10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녹색기술 적합성 인증' 및 '녹색사업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을 취득하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전산코드	지원부문	지원부문	선정기준
A6	추천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에서 ‘울산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력산업(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중 <별첨>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이차전지 관련 업종³⁾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A9	전입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로 전입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를 지원 1. 타 지역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내복귀기업’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으로 동법 제1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 동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전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01), 임업(02) 및 어업(03)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A14	명절·재해 자금 등 ⁵⁾ 필요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⁵⁾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 노사분규, 부도급증 등으로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전산 코드	지원부문	지원 부문	선정기준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⁴⁾ 1) 합성수지선 건조업(31112) 2) 해운업(501~502) 3) 운차·수박업(55~56) 4) 분소매업(45~47) 5) 여행업(752) 6) 운수업(49, 51~52) 7) 여가업(90~91)

- 주 :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3) 이차전지 관련 업종 범위는 축전지제조업(산업분류코드:28202)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광물,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관련 부품·장비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
- 4) ()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KSIC, 제10차)
- 5) 울산본부장은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첨>

지역주력산업 및 산업분류코드

전략산업	분류코드 ¹⁾	세부업종
그린모빌리티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스마트조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미래화학신소재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저탄소에너지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KSIC, 제10차)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